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96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민형배·주철현·정동영

김문수 • 양부남 • 안도걸

이개호 • 박지원 • 소병훈

김동아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습니다. 지역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의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지역 저소득층, 여성 및 소기업 등 대출수요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 RA Examination) 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합니다. 검사결과가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일회성 법제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CRA 준수사항 평가에도 여전히 차별적 대출관행이 지속되자 1994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법(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98년에 지역개발 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CDFI Fund)을 설립했습니다.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직접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유도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했습니다. 지역별편중 대출관행이일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국처럼 단순히 평가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 지역재투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CDFI Fund와 같이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모아야 합니다.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직접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 와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 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를 명시함(안 제3조).
-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
- 다. 기금은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5 조).
-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기금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사.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 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재투자 및 지역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 재투자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지역재투자"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지역의 서민경제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를 하고, 그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지역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역의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 나.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자금지원
 - 다.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 라. 그 밖에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관리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금융회사의 출연금
 - 4. 기부금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다른 기금,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2. 제1호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 3.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지역재투자 사업과 관련된 조사 · 연구
 -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기금을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계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 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정의 자금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
- 5.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6.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8.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9.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10.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 ③ 위원장은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계정의 구분) ① 기금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 1. 서울지역계정
- 2. 부산지역계정
- 3. 대구지역계정
- 4. 인천지역계정
- 5. 광주지역계정
- 6. 대전지역계정
- 7. 울산지역계정
- 8. 강원지역계정
- 9. 경기지역계정
- 10. 충북지역계정
- 11. 충남지역계정
- 12. 전북지역계정
- 13. 전남지역계정
- 14. 경북지역계정
- 15. 경남지역계정
- 16. 제주지역계정
- 17. 세종지역계정
- 1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계정

- ② 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지역계정에서 자금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역 계정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금융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진흥원은 기금의 회계를 진흥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10조(지도·감독) ①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